

	발전기금관리 규정	문서번호	3-1-29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기획처 /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- ① 기부금 및 기부물품이라 함은 교육, 연구 및 장학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본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 및 연구,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대학에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사용 원칙 및 구분) 기금은 출연용도 및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기금은 일반발전기금과 특정목적기금으로 구분한다.

- ① 일반발전기금 :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
- ② 특정목적기금 : 기부자가 학생복지, 장학, 시설 개선 및 학과지원기금으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

제5조(기금의 접수와 문서관리) ① 기부금 및 기부물품의 접수와 문서관리는 기획처에서 한다.

- ②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계팀으로 이관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영 및 회계처리) ① 기획처장은 발전기금조성사업을 총괄지휘한다.

- ② 발전기금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기부금 및 기부물품의 입출금은 본 대학 회계팀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모금결과 보고) 기획처장은 발전기금의 모금결과를 매회계연도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	<h2 style="margin: 0;">발전기금관리 규정</h2>	문서번호	3-1-29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기획처 / 사무처

제 2 장 발 전 기 금 관 리 위 원 회

제8조(목적) 발전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발전기금 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 관리 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설치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기부금 및 기부물품의 모금 계획 수립
- ② 발전기금 관리
- ③ 발전기금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
- ④ 기부자의 예우
- ⑤ 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

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- 2.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3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